

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의거 도서관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

2008년 3월 13일

문화체육관광부 장관

도서관 보상금 기준

1. 적용기간 : 1년(2008. 1. 1. ~ 2008. 12. 31.)
2. 보상 대상 :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(다른 도서관 등으로 부터 복제·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)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

3.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

구 분		이용 형태 및 보상금 기준	
		출 령	전송(전송을 위한 복제 포함)
단 행 본	판매용	1면당 5원	1파일당 20원
	비매용	1면당 3원	1파일당 0원
정기간행물	판매용	1면당 5원	1파일당 20원
	비매용	1면당 3원	1파일당 0원

4.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
- 1) 출력 -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아날로그 형태로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.
- 2) 전송 - 다른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 모니터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는 것과 실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디지털 송신을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.
- 3) 1면 - 이용 대상이 된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의 1쪽을 말한다.
- 4) 1파일 - 단행본의 경우에는 전체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,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이에 수록된 각각의 기사 또는 논문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말한다.